

[공통사항]

◆ 시민안전공제는?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시민안전공제는 동 상품에 가입한 회원(지자체)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피공제자(시·군·구민)의 상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합니다. ※ 모든 사고의 입증책임은 피공제자(공제수익자)에게 있습니다.
◆ 보장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㉠ 회원별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공제가입기간 중 발생한 사고를 보장합니다.
◆ 보장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㉠ 회원별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가입담보 중 담보별 보상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.
◆ 주요용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㉠ 피공제자 : 공제사고의 대상이 되는 자로 회원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있는 자 ㉡ 공제수익자 : 공제사고에 대한 공제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피공제자 생존 시 : 본인 / 사망 시 : 법정상속인 / 미성년자 : 법정대리인 ㉢ 상해 : 공제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피해 ㉣ 장해 : 상해의 직접결과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치료한 후에 계속하여 남아 있는 정신 및 신체의 영구적인 훼손상태(장해분류표 적용)
◆ 공통면책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㉠ 피공제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㉡ 공제수익자가 고의로 피공제자를 해친 경우 ㉢ 전쟁, 외국의 무력행사, 혁명, 내란, 사변 폭동 등으로 인한 사고나 그 기간 중의 사고 ㉣ 상해와 연관성 없는 질병으로 기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
◆ 소멸시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㉠ 공제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.

[자연재해 상해사고 사망]

◆ 보상하는 손해 (만15세 이상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㉠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자연재해(열사병, 일사병, 저체온증 포함)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(질병제외) 공제수익자(법정상속인)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.
◆ 자연재해란?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㉠ 자연재해'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(정의) 제1호 가목에서 정의된 '자연재난' 및 '열사병, 일사병, 저체온증'으로 아래의 사고를 말합니다. 가. 자연재난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(정의) 제1호 가목에 정의된 재난을 말합니다. 다만, 법의 개정 등으로 인해 항목의 추가가 있는 경우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. 나. 열사병 및 일사병: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T67.0 (열사병 및 일사병)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. 다. 저체온증 :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T68.0(저체온증)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. <p>※ 단, 가항은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보고된 경우에 한합니다.</p>
◆ 주요면책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㉠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㉡ 가항의 경우 재난상황의 보고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

[폭발, 화재, 붕괴 상해사고 사망]

<p>◆ 보상하는 손해 (만15세 이상)</p>	<p>☛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아래에서 정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(질병제외) 공제수익자(법정상속인)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.</p>
<p>◆ 사고의 정의</p>	<p>㉠ 폭발, 파열 및 화재(벼락 포함)사고 ㉡ 건물 및 건축구조물(건축중인 것을 포함)의 붕괴·침강 또는 사태사고 - 붕괴란 폭발, 파열,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함. 단,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음. - 침강이란 폭발, 파열,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는 것을 의미함. - 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함.</p>
<p>◆ 주요면책사항</p>	<p>㉠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㉡ 운행중인 자동차의 화재, 폭발·파열사고로 입은 신체상해 ㉢ 화재사고가 아닌 사유로 신체에 입은 화상</p>

[폭발, 화재, 붕괴 상해사고 후유장애]

<p>◆ 보상하는 손해</p>	<p>☛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아래에서 정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[별표1] 장애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애지급률에 해당하는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(질병제외) 공제수익자(법정상속인)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애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. ※ 단, 장애가 최저 지급률 장애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.</p>
<p>◆ 사고의 정의</p>	<p>㉠ 폭발, 파열 및 화재(벼락 포함)사고 ㉡ 건물 및 건축구조물(건축중인 것을 포함)의 붕괴·침강 또는 사태사고 - 붕괴란 폭발, 파열,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함. 단,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음. - 침강이란 폭발, 파열,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는 것을 의미함. - 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함.</p>
<p>◆ 주요면책사항</p>	<p>㉠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㉡ 운행중인 자동차의 화재, 폭발·파열사고로 입은 신체상해 ㉢ 화재사고가 아닌 사유로 신체에 입은 화상</p>

[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고 사망]

◆ 보상하는 손해 (만15세 이상)	☛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아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(질병제외) 공제수익자(법정상속인)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.
◆ 사고의 정의	㉠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공제자가 탑승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㉡ 대중교통수단에 피공제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㉢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공제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
◆ 대중교통수단의 범위	㉠ 여객수송용 항공기 ㉡ 여객수송용 지하철/전철, 기차 ㉢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,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(전세버스 제외) ㉣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, 개인택시(렌트카 제외) ㉤ 여객수송용 선박
◆ 주요면책사항	㉠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㉡ 시운전, 경기(연습을 포함합니다) 또는 흥행(연습을 포함합니다)을 위하여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㉢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㉣ 교통수단의 설치, 수선, 점검,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

[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고 후유장애]

◆ 보상하는 손해	☛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아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[별표1]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 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(질병제외) 공제수익자(법정상속인)에게 공제등록금액 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. ※ 단, 장애가 최저 지급률 장애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.
◆ 사고의 정의	㉠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공제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㉡ 대중교통수단에 피공제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㉢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공제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
◆ 대중교통수단의 범위	㉠ 여객수송용 항공기 ㉡ 여객수송용 지하철/전철, 기차 ㉢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,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(전세버스 제외) ㉣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, 개인택시(렌트카 제외) ㉤ 여객수송용 선박
◆ 주요면책사항	㉠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㉡ 시운전, 경기(연습을 포함합니다) 또는 흥행(연습을 포함합니다)을 위하여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㉢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㉣ 교통수단의 설치, 수선, 점검,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

[익사사고 사망]

- ◆ 보상하는 손해 (만15세 이상)
 - ㉠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익사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(질병제외) 공제수익자(법정상속인)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.
- ◆ 사고의 정의
 - ㉠ 익사 사고
 - 익사사고란 피공제자가 수영 중 또는 다이빙 중에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와 기타 태풍, 홍수, 선박침몰, 실족사고 등으로 강, 하천, 바다 등에 빠져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를 말합니다.
 - ㉡ 기타 약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공제회가 익사사고로 인정하는 사고를 포함합니다.
- ◆ 주요면책사항
 - ㉠ 공통면책사항의 사유

[가스 상해사고 사망]

- ◆ 보상하는 손해 (만15세 이상)
 - ㉠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(질병제외) 공제수익자(법정상속인)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.
- ◆ 사고의 정의
 - ㉠ 가스의 누출사고
 - ㉡ 가스의 누출로 인한 폭발·화재사고
 - ㉢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현상 등에 의한 가스시설 및 가스용기, 가스용품 파열사고 등
- ◆ 가스의 범위
 - ㉠ 「도시가스사업법」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한 “도시가스”
 - ㉡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“액화석유가스”
 - ㉢ 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」제2조에서 정의한 “고압가스”
- ◆ 주요면책사항
 - ㉠ 공통면책사항의 사유

[가스 상해사고 후유장애]

- | | |
|-----------|--|
| ◆ 보상하는 손해 | <p>☛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[별표1]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(질병제외) 공제수익자(법정상속인)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.</p> <p>※ 단, 장애가 최저 지급률 장애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.</p> |
| ◆ 사고의 정의 | <p>㉠ 가스의 누출사고</p> <p>㉡ 가스의 누출로 인한 폭발·화재사고</p> <p>㉢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현상 등에 의한 가스시설 및 가스용기, 가스용품 파열사고 등</p> |
| ◆ 가스의 범위 | <p>㉠ 「도시가스사업법」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한 “도시가스”</p> <p>㉡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“액화석유가스”</p> <p>㉢ 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」제2조에서 정의한 “고압가스”</p> |
| ◆ 주요면책사항 | <p>㉠ 공통면책사항의 사유</p> |

[감염병 사망]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◆ 보상하는 손해
(만15세 이상) | <p>☛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감염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공제수익자(법정상속인)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.</p> |
| ◆ 감염병의 범위 | <p>☛ 제1항의 “감염병”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(정의) 제1호 나목에 정의된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서 규정한 감염병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합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의 타목에서 규정한 신종감염병증후군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2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4호의 커목에서 규정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(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) <p>※ 단, 감염병에 의한 사망의 인정은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보고된 경우에 한합니다.</p> |
| ◆ 주요면책사항 | <p>㉠ 공통면책사항의 사유</p> |